

# 학교상담법

## 학생을 환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상담 운영 원칙

홍윤이·유달리 사례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빈칸에서 출발하는 제안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사도 혼자 치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이 법의 출발점은 한 아이의 장면이다

홍윤이와 유달리 사례는 “문제 아동”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가 아이의 마음을 어떤 언어로 번역하는지 보여준다.



## 이 흐름의 빈칸

“이 아이는 무엇에 살아나는가?”  
“그 행동은 어떤 생활 장면에서 나왔는가?”  
“학교 안에서 무엇을 먼저 시도했는가?”

**학교상담법은 아이를 병명으로 닫기 전에  
학교 안에서 먼저 읽고, 상담하고, 보호하는 절차다.**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좋은 의도와 빈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자원을 연결하는 법이다. 그러나 상담 원칙이 없으면 “통합지원”이 “통합관리”가 될 수 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자원 연결
- 학교·교육청·지역사회 협력
- 조기 발견, 선정, 연계, 조정
- 놓치는 학생을 줄이는 지원망

보완

## 학교상담법의 빈칸

- 학생을 어떤 언어로 읽을 것인가
- 검사 결과는 어디까지 쓸 것인가
- 상담 기록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의료 연계 전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 핵심 명제: 학교상담법은 업무 추가법이 아니다

학교상담법은 담임과 상담교사에게 “더 하라”는 법이 아니라, 지금 이미 떠넘겨진 책임을 나누는 법이다.

교사에게 “이런 것까지 하라”가 아니라,  
교사가 더 이상 “이런 것까지 혼자 떠안지 않도록” 만드는 법

### 현재 학교의 뒤섞임

학생상담 · 학부모 민원 · 위기 판단 · 외부기관  
연계 · 행정기록 · 사고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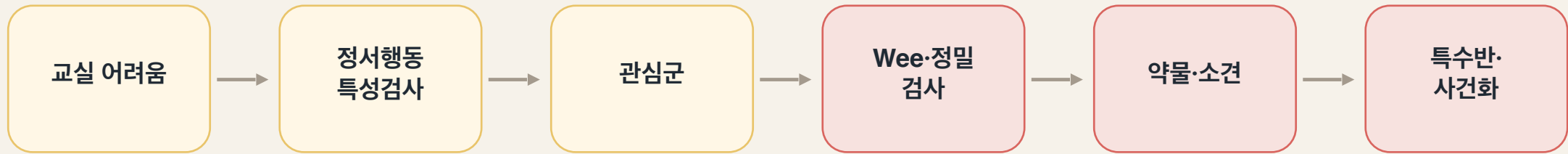


### 법이 해야 할 정리

관찰은 담임, 전문상담은 상담교사, 민원과 책임은  
관리자, 자원과 슈퍼비전은 교육청

# 홍윤이 사례: 병명으로 번역되는 아이

홍윤이의 행동은 학교 안에서 마음의 단서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신호로 읽혔다.



## 사라진 질문

- 무엇에 몰입하는가?
- 언제 몸이 먼저 반응하는가?
- 학교 코드를 어디까지 배웠는가?
- 어떤 작은 조정이 가능한가?

검사와 연계가 도움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의 마음읽기를 대체하면, 아이는 서류 속에서 걷는다.

## 유달리 사례: 문제행동 뒤의 관계 욕구

유달리 사례는 교사가 아이를 “처리”하지 않고 “읽을” 때 학교상담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 겉으로 보인 것

- 수업 방해
- 반복되는 문제행동
- 친구와의 갈등
- 처벌·학폭 절차의 유혹

상담적 전환



### 다시 읽힌 것

-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아이
- 표현 방법을 모르는 아이
-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 아이
- 좋은 교사 한 명만으로는 부족한 구조

# 학교 현장의 모순: 교육하고 싶은데 방어해야 한다

학생을 돕기 위한 체계가 교사에게는 책임 회피형 기록과 민원 대응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 교육의 질문

이 아이는 무엇을 배우지 못했는가?  
어떤 관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 행정의 질문

누가 책임지는가?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어디로 연계했는가?

결과적으로 학교는 아이를 교육하기보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쉽다.

# 학교의 의료화는 어떻게 촉진되는가

교사와 상담교사를 보호하는 구조가 없을 때, 학교는 더 빨리 검사·진단·연계의 언어에 의존한다.



검사·진단·외부기관 연계가 “안전한 선택”이 되는 구조

의료가 필요한 위기는 신속히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안 상담이 먼저 필요한 어려움까지 의료 언어로 달아서는 안 된다.

# 학교상담법의 법적 성격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안에 빠진 상담권·상담절차·정보보호·의료연계 기준을 보완하는 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법”  
학교상담법은 “학생을 놓치지 않으려다 환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법”



## 상담권

낙인 없이 말할 권리



## 절차권

검사 이후 학교 안 상담



## 정보권

상담 기록·내면 정보 보호



## 보호권

담임·상담교사 법적 보호

# 학교상담법 전체 구성 제안

가칭 「학교상담법」은 선언적 법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는 운영법이어야 한다.

- 01 ——— 총칙: 목적·정의·기본 원칙
- 02 ——— 학생 상담권과 낙인 방지
- 03 ——— 검사·기록·정보보호 기준
- 04 ——— 담임·상담교사·관리자 역할
- 05 ——— 공동 사례회의와 지원계획
- 06 ——— 의료·특수교육 연계 기준
- 07 ——— 학부모 상담과 민원 분리
- 08 ——— 인력·시간·슈퍼비전·교원 보호

분류에  
서  
읽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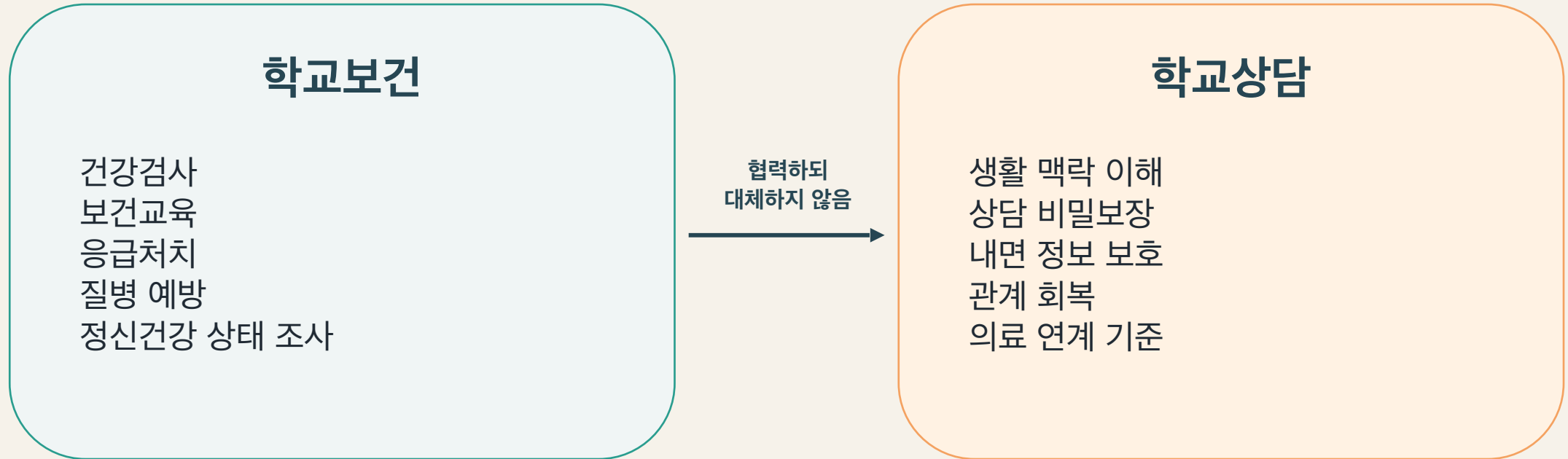
# 10대 원칙: 학교가 병원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 조건

10대 원칙은 “학생 보호”와 “교사 보호”를 동시에 세우는 구조다.



# 원칙 1. 학교보건과 학교상담은 구분되어야 한다

보건은 건강검사와 응급·질병 예방의 영역이고, 상담은 생활 맥락·관계·내면 정보 보호의 영역이다.



## 원칙 2~3. 학생은 진단 대상이 아니라 말할 권리를 가진 존재

학생의 산만함·분노·무기력·등교거부는 위험 신호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삶의 질문일 수 있다.

### 분류의 언어

관심군  
위험군  
ADHD 의심  
문제행동  
특수반 대상



### 자기 언어

“소리가 싫었어요”  
“심심하면 움직이고 싶어요”  
“관심 받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담은 학생을 조용하게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학생이 자기 행동의 이유와 책임을 말하게 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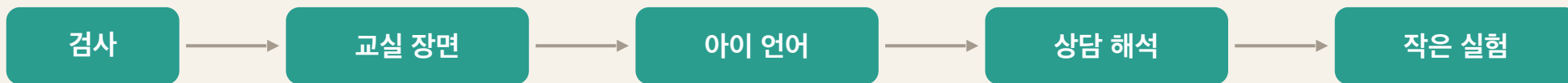
## 원칙 4. 검사는 상담의 결론이 아니라 참고자료다

검사 결과가 아이의 이름이 되는 순간, 마음읽기는 멈춘다.

### 나쁜 작동



### 상담법의 작동



조문화: 검사 결과만으로 의료·특수교육 연계를 자동화하지 못하도록 한다.

## 원칙 5. 담임교사는 생활 맥락을 보는 1차 교육상담자다

담임교사는 치료자가 아니다. 아이의 일상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교육자다.

### 담임이 하는 일

- 언제 무너지는지 관찰
- 어떤 관계에서 흔들리는지 기록
- 수업 장면의 변화 포착
- 상담교사와 공유

### 담임이 아닌 것

- 정신건강 진단자
- 전문 치료자
- 학부모 민원 담당자
- 위기 판단 최종 책임자

### 법이 보장할 것

- 상담 시간
- 행정업무 경감
- 사례회의 시간
- 슈퍼비전·자문
- 법적 보호

## 원칙 6. 상담교사는 행정·연계 담당자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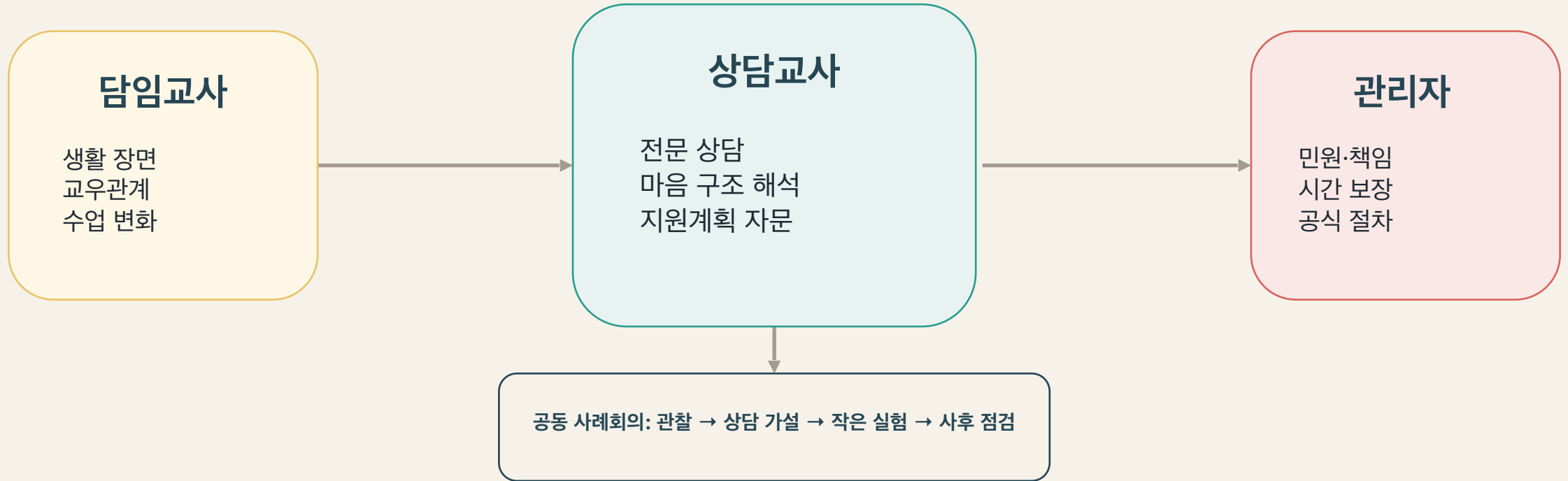
상담교사는 검사 결과 처리자가 아니라 학생의 내면·관계·학교생활 회복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주체다.



상담교사가 생활 장면을 읽지 못하면 상담은 학교생활과 분리된다.  
법은 상담교사의 전문 권한과 협업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원칙 7. 담임·상담교사·관리자는 협력 구조로 움직인다

학교상담법은 “누가 더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책임지느냐”를 정하는 법이다.



## 원칙 8. 상담 비밀과 학부모 민원은 분리되어야 한다

학부모는 협력자이지만, 반복 민원과 책임 추궁은 학생상담이 아니라 공식 행정 절차다.

### 학부모 상담

학생 이해와 회복을 위한 협력  
담임·상담교사·보호자가 함께  
생활 장면과 지원계획을 나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 공유

### 학부모 민원

항의·책임 추궁·사과 요구  
처벌 요구·학폭 요구  
반복 연락·특정 교사 문제제기  
학교장 책임의 공식 절차

상담 기록은 민원 대응 자료가 아니라 학생 회복을 위한 보호 자료다.

## 원칙 9. 의료기관 연계는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학교상담법은 정신과 진료를 막자는 법이 아니라, 실제 위기와 교육상담이 먼저 필요한 어려움을 구분하는 법이다.

### 즉각 연계가 필요한 위기

자살 계획 · 반복 자해 · 학대 피해 · 심각한 폭력 위험 · 현실 검증력의 심각한 손상 · 생명·신체 긴급 위험

### 먼저 학교 안 상담이 필요한 어려움

무기력 · 관계 갈등 · 학업 실패 후 좌절 · 등교 거부 · 수업 회피 · 진로 혼란 · 입시 불안 · 가족 기대와 갈등 등

담임 관찰 + 상담교사 전문 의견 + 관리자 책임 결정 + 보호자 협의 + 외부 전문가 자문

연계 이후에도 학교 안 관계 회복과 성장 지원은 중단되지 않는다.

## 원칙 10. 목표는 관계 회복과 성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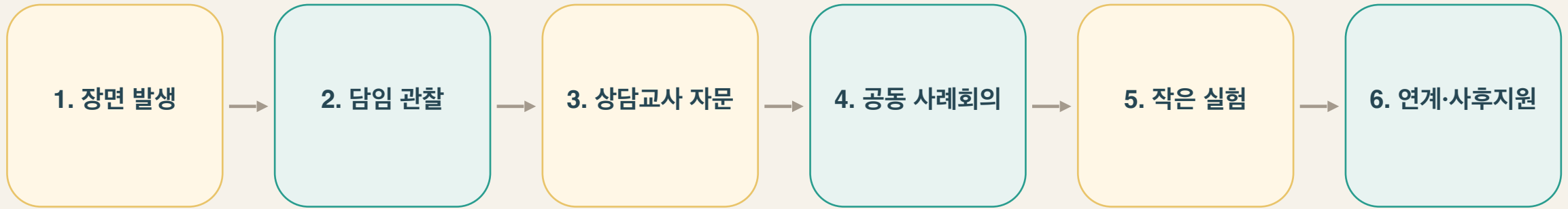
문제행동을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학생이 자기 행동의 의미와 책임을 배우도록 돕는다.



**유달리법은 위험한 행동을 허용하는 법이 아니다.  
행동에 책임을 묻되, 그 행동 뒤의 마음을 읽고 학교 안 관계로 돌아오게 하는 법이다.**

# 학교상담법의 실제 작동: 6단계 절차

법은 철학보다 먼저 현장에서 움직일 절차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례회의는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무엇을 먼저 읽고 시도했는가?”를 묻는다.

**의료·특수교육 연계는 5단계 이전의 자동 결론이 아니라, 4~5단계를 거친 판단이어야 한다.**

# 공동 사례회의는 무엇을 다루는가

사례회의는 학생을 판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실행할 작은 실험을 정하는 자리다.

## 장면

언제·어디서·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나

## 마음 가설

무엇에 살아나고  
무엇에서 무너지는가

## 학교 코드

아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규칙은 무엇인가

## 작은 실험

자리·휴식·표현·관계  
조정을 어떻게 할까

## 책임 분담

담임·상담·관리자·부모가  
각자 무엇을 맡을까

결론은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무엇을 먼저 해볼 것인가?”

# 상담 기록과 정보 공유 기준

학생 내면 정보는 학생을 돕기 위한 자료이지 관리·징계·민원 대응 자료가 아니다.

## 기록 목적

상담 계획  
위기 판단  
지원 방향  
사후 점검

## 공유 기준

최소 범위  
사전 설명  
실질 동의  
긴급 위험 예외

## 금지

낙인 자료화  
민원 대응용 전용  
무분별한 행정 공유  
처벌 근거화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시행 모순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통합지원이 통합관리로 흐르지 않도록 학교상담법이 네 가지 안전장치를 둔다.

## 선정 전 상담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학생의 자기 언어와 생활 맥락 확인

## 정보 최소화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에 상담 내면 정보를 무분별하게 올리지 않음

## 연계 전 절차

의료·특수교육 연계 전 학교 안 상담과 사례회의 의무화

## 교원 보호

지원 대상자 발굴·관리 책임을 담임과 상담교사 개인에게 전가 금지

## 법 조문 제안 ① 목적과 정의

목적 조항은 학교상담법이 학생 보호와 교원 보호를 동시에 위한 법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법은 학생의 학교생활 어려움을 낙인 없이 상담하고,  
담임교사·상담교사·학교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의료화와 민원 전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조항

- 학교상담: 학생의 생활 맥락·관계·자기이해·학교적응을 돕는 교육적 상담
- 교육상담: 담임의 생활 관찰과 상담교사의 전문상담이 연결되는 학교 안 상담 과정
- 공동 사례회의: 학생 지원 방향을 학교 구성원이 함께 결정하는 공식 절차
- 학생 내면 정보: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민감한 자기이해·관계·가족·위기 관련 정보

## 법 조문 제안 ② 학생의 상담권과 낙인 방지

학생은 상담을 받는다는 이유로 문제아·위험군·환자로 불려서는 안 된다.

- 권리 1 상담 사유 설명받을 권리
- 권리 2 기록·공유 범위를 알 권리
- 권리 3 낙인 없이 상담받을 권리
- 권리 4 자기 어려움을 자기 언어로 말할 권리
- 권리 5 불이익 없이 상담받을 권리

### 금지

검사명  
분류명  
진단명  
특수반  
낙인화

## 법 조문 제안 ③ 역할과 책임의 분담

담임·상담교사·관리자·교육청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교사 부담이 줄어든다.

### 담임

생활 관찰  
학생 변화 기록  
상담교사와 협력

### 상담교사

전문상담  
상담계획  
위기 평가·자문

### 관리자

민원·공식 절차  
시간·업무 조정  
교원 보호

### 교육청

전담 인력  
슈퍼비전  
법률·전문 자문

**금지 조항: 학생상담·생활지도·민원·위기관리·연계 책임을 특정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 법 조문 제안 ④ 상담 절차와 사례회의

검사나 문제행동 이후 바로 외부로 넘기기 전에, 학교 안 상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안 발생

담임 관찰 기록

상담교사 면담·자문

공동 사례회의

학생 지원계획

실행·점검

필요 시 연계

예외: 자살 계획, 심각한 폭력 위험, 학대 피해 등 긴급 위험은 즉시 보호·전문기관 연계하되, 학교 안 사후지원은 중단하지 않는다.

## 법 조문 제안 ⑤ 학부모 상담과 민원 분리

학부모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담임이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학교가 책임 구조를 세우자는 것이다.

### 상담

학생 회복을 위한 협력  
생활 장면과 지원계획 공유  
필요 범위의 정보 제공

관리자 공식 절차



### 민원

항의·책임 추궁  
사과·처벌 요구  
반복 연락·학폭 요구

서면 접수 · 관리자 동석 · 반복 민원 기준 · 녹취/기록 기준 · 교육청 지원 요청 절차

## 법 조문 제안 ⑥ 교원 보호와 자원 보장

시간·인력·수당·법률지원 없는 학교상담법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상담 시간 보장

공동 사례회의 시간

행정업무 경감

담임교육상담수당

상담교사 전문연수

슈퍼비전·외부 자문

교육청 전담 인력

법률지원·면책 보호

법에 따른 상담·생활교육·사례회의·연계 절차를 성실히 수행한 교원은  
민원·징계·손해배상 책임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 담임교사는 어떻게 반응할까: 첫 반응은 방어적일 수 있다

담임교사의 첫 질문은 “좋은 말은 알겠는데, 결국 또 내가 다 하라는 것 아닌가?”일 가능성이 높다.

### 초기 반응

- 수업은 누가 하나?
- 민원은 누가 막나?
-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 상담까지 하라는 것 아닌가?

### 설명 후 반응

- 관찰 역할만 명확하면 가능
- 민원 분리와 관리자 책임이 필요
- 사례회의 시간이 보장되어야 함
- 법적 보호가 있으면 설득력 있음

## 담임교사를 설득하는 핵심 문장

학교상담법은 담임에게 상담 책임을 추가하는 법이 아니라 담임의 교육자 역할을 보호하는 법이다.

**담임교사는 치료자가 아닙니다.  
담임은 학생의 생활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교육자입니다.**

### 담임에게 줄 변화

- 부모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 민원은 관리자 절차로 넘어간다
- 혼자 판단하지 않고 사례회의를 요청한다
- 상담교사의 전문 자문을 받는다
- 법에 따른 생활교육은 보호받는다

## 상담교사는 어떻게 반응할까: 권한 확대와 업무 전가 사이의 긴장

상담교사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점에는 반응하지만, 민원·행정·연계 업무가 더 몰릴까 경계할 수 있다.

### 기대

- 독립적 전문 주체로 인정
- 상담 기록 보호 권한
- 공동 사례회의 요청권
- 담임 자문 권한

### 우려

- 검사 처리 업무 증가
- 외부기관 연계 담당자로 고정
- 학부모 민원 완충 장치화
- 상담 비밀 침해 압박

## 상담교사를 설득하는 핵심 문장

학교상담법은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법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법이다.

상담교사는 연계 담당자가 아니라,  
학생의 마음과 관계 회복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지원하는 사람이다.

### 상담교사에게 필요한 보장

- 학생상담 계획 수립권
- 상담 내용 보호 권한과 의무
- 담임교사 전문 자문권
- 공동 사례회의 요청권
- 위기 수준 평가와 연계 의견 제시권
- 정기 슈퍼비전과 외부 전문가 자문

## 예상되는 반론과 답변

학교상담법은 의료·특수교육·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계를 분명히 한다.

**“교사 업무가 늘어난다”**

이미 떠넘겨진 업무를 나누고 보호하는 법이다

---

**“의료를 막자는 건가”**

실제 위기는 더 빨리 연결하되, 비위기는 학교상담을 먼저 한다

---

**“특수교육을 부정하나”**

필요한 학생에게는 권리다. 다만 분리 통로가 되어선 안 된다

---

**“학생맞춤법과 중복 아닌가”**

학생맞춤법은 지원망, 학교상담법은 상담 원칙과 절차다

---

# 학교상담법이 만들어지면 학교 현장은 어떻게 바뀌는가

같은 아이, 같은 행동이라도 학교가 묻는 질문이 달라진다.

## 현재

행동 발생 → 문제행동 기록 → 검사/관심군 →  
외부기관 연계 → 부모 거부/담임 소진 → 사건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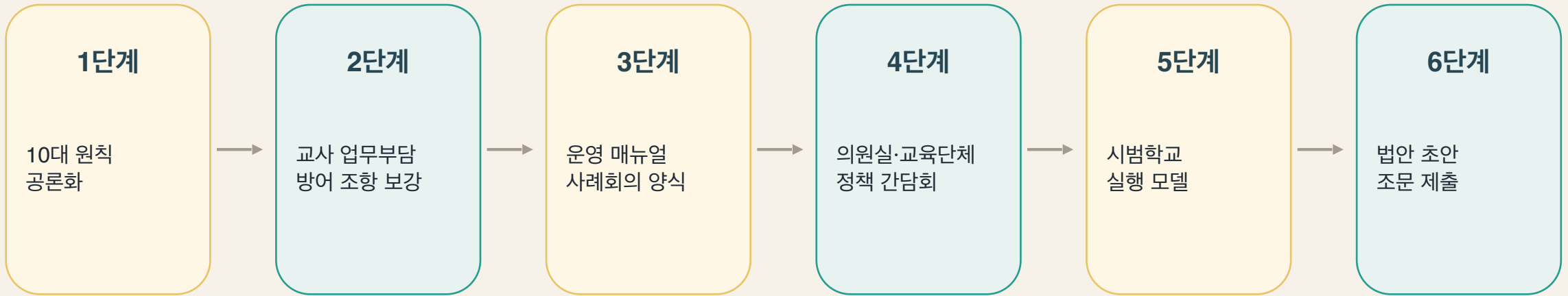
## 학교상담법 이후

행동 발생 → 생활 장면 관찰 → 상담교사 자문  
→ 사례회의 → 작은 실험 → 필요 시 연계와 사  
후지원

변화의 핵심은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서  
“학교 안에서 무엇을 먼저 읽고 시도했는가?”로 질문이 바뀌는 것이다.

# 입법 추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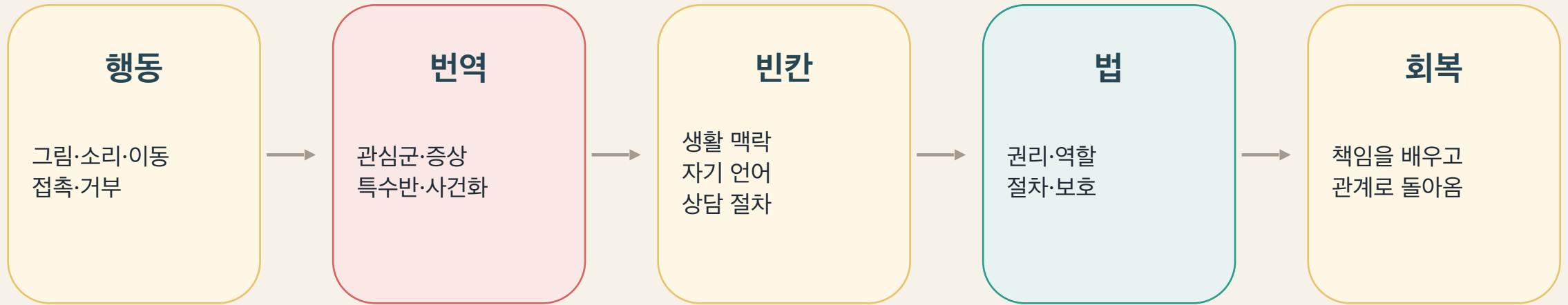
학교상담법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교사·상담교사·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운영안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핵심은 “아이를 살리는 법”이면서 동시에 “교사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이중 메시지다.

# 한 장으로 보는 학교상담법의 이야기

학교상담법은 한 아이의 행동을 병명으로 단지 않고, 학교 안 관계로 되돌리는 법이다.



학생을 선별·분류하는 학교에서, 삶을 읽고 성장시키는 학교로.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학교에서, 학교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상담 체계로.

# 홍윤이와 유달리를 누가 읽어줄 것인가?

학교상담법은 학생을 병명과 행정 절차로부터 지키는 법이면서,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혼자 떠안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상담의 법이 필요하다.